



2026년 상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(일반직, 공무원, 기간제계약직)

우리 공단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. 4. 28.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

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일반직 및 공무원

구분	직급	분야*	근무지	인원	응시자격요건 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	
일반직	신입	5급	일반행정	서울	2	•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
			재무회계	서울	1	•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
			토목	서울	1	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
				전국	2	
			수산	서울	1	• 해당 분야*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* 해양 · 수산 · 양식 관련 학부 또는 학과 전공
				전국	1	
			선박(기관)	서울	1	•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•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(26.5.12.)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(26.6.30.) 기준 유효하여야 함 •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
				여수	1	
			선박(항해)	강릉	1	• 5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•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(26.5.12.)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(26.6.30.) 기준 유효하여야 함 •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
			소계			
공무원	신입	5급	토목	서울	1	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
			소계			
총계				12		

□ 기간제계약직

구분	직급	분야*	근무지*	근무기간	인원	응시자격요건 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	
기간제 계약직	경력	4급	일반행정 (어촌개발)	강화군 (삼산면)	12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* 경력 7년 이상인 자 * 어촌개발 지역개발사업 어촌뉴딜·재생사업 일반어촌농산 개발사업 등 관련 경력
	경력	5급	수산	서울	12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* 경력 3년 이상인 자 * 수산·양식·어촌사업계획 등 관련 경력
	신입	5급	일반행정	서울	12개월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
				인천	12개월	2	
				강화군 (삼산면)	12개월	1	
				홍성	12개월	2	
				부산	12개월	2	
				창원	12개월	2	
				제주	12개월	2	
	일반행정 (홍보)	서울	12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 (우대) 디자인툴 사용 가능자 		
	수산	서울	12개월	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 (우대)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이상 보유자 		
	토목	서울	12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(우대)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이상 보유자 		
		부산	12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한 자 (우대)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이상 보유자 		
	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			대이작도	4개월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일(26.4.28) 기준 용진군 해양보호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- 대이작도 : 인천광역시 용진군 자월면 이작리 - 장봉도 : 인천광역시 용진군 북도면 장봉리
				장봉도 (단시간)	4개월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을 수령 하지 않는 자
총계					34		

□ 공통 응시자격요건 ※ 단,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이 상이함.

구분	응시자격요건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
학력 및 전공	· 제한 없음
연령	· 제한 없음 ※ 단,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자(일반직 및 공무원에 한함)
병역	·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어학점수	· 제한 없음
기타	·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□ 근무조건

구분	직급	분야	근무형태	월보수(법정수당 포함)
				* 법정수당 외 기타수당, 성과연봉 등은 공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일반직	5급	전 분야	전일제	• 2,736,700원(기본급 2,596,7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공무직	5급	전 분야	전일제	• 2,280,600원(기본급 2,140,6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기간제계약직	4급	전 분야	전일제	• 3,778,200원(기본급 3,638,2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	5급	전 분야	전일제	• 2,736,700원(기본급 2,596,7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	해양보호관리구역 명예관리인		전일제	• 2,280,600원(기본급 2,140,6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			단시간근로자	• 일 130,000원 (일 8시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 및 일수에 따라 정산 후 지급)

- 1)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무 분야 관련 경력만 월보수에 추가 산정되어 지급(응시자격요건 경력에 최대 4년 추가/
해양보호관리구역 명예관리인은 해당하지 않음)
 - 기재하지 않은 경력 또는 경력증명서상 업무내용이 증빙되지 않거나 미제출, 해당 분야 경력이 아닌 경우 불인정
- 2)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추후 업무평가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최대 24개월 근무 가능(해양보호관리 명예관리인 제외)
- 3) 성과연봉(세부사항은 공단 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세칙 준용, 해양보호관리구역 명예관리인은 제외)
 - 일반직 및 공무직, 기간제계약직: 회계연도 중 3개월 이상 근무 시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 (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20%내외 차등지급)
 - 기간제계약직(해양보호관리 명예관리인): 성과급 지급 대상 아님
- 4) 채용유형별 연봉, 승급 등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규정을 따름(해양보호관리구역 명예관리인 제외)
- 5) 해양보호관리구역 명예관리인(단시간근로자): 공단과 협의 후 근무일과 시간을 지정하며,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일수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함.
- 6)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부여하며, 평가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 결정
- 7) 모든 기간제계약직은 계약 기간 근무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

- 세부 직무 및 수행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조 및 수행업무는 배치되는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름
- 근무지는 첫 발령지이며, 이후 전 직무 본사 및 전국 지방조직(지사, 센터 등) 순환근무
- **숙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것**
-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또는 공단 계획에 따라 본사 및 지방조직(지사, 센터 등)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
- **본사·지사 주소안내**
 - 본 사(서울)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, 한라시그마밸리 12층
 - 서 해 지 사(홍성)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길 20, 광명헤세드 5층
 - 남서해지사(목포):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(해안동1가), 목포국제여객터미널 2층
 - 남동해지사(창원)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6(오동동), 삼성생명빌딩 6층
 - 제 주 지 사(제주)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-65(영평동),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
 - 동 해 지 사(강릉)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, 2층
- ※ 기타 센터(또는 선박사무소) 및 지원단(부산) 상세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

□ 우대사항 및 자격증

항목		가산점	적용전형	내용	
우 대 사 항	취업지원대상자	법령에따름 (5%,10%)	전 전형	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	
	장애인	5%	서류/ 면접	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
	저소득층	3%	서류	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
	북한이탈주민	3%	서류	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
	다문화가족	3%	서류	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	
	자립준비청년	3%	서류	•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이고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'에 한하여 적용	
	비수도권 지역인재	1%	서류	• 최종학력(석사이상은 학사 기준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자 (붙임2참조)	
	우리공단 근무 경력자 1)일반직 및 공무직 지원자만 해당	6개월~1년미만 1년~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 이상	2% 2.5% 3%	서류	• 한국어초어항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(잡알리오)에 게시된 한국어초어항공단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(청년인턴 제외)으로 근무한 경력 으로, 경력 인정 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 에 한함
	해당지역 거주자 2)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*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지역을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	2%	서류		
사회형평적 인력 채용목표제			서류/ 필기	• 사회형평적 인력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 • 모집단위별 사회형평적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서 합격선 -20점 이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예정인원의 20%(소수점 올림)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	
양성평등 채용목표제			서류 /필기	• 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서류전형, 필기전형 선발인원의 30%(소수점버림)에 미달하는 경우, 합격선 -3점 이내 목표미달 성별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	
자격증			서류	• 채용분야별 자격증 (참고)	

- 1) 일반직 및 공무직 지원자에 한함
- 2) 계약직 지원자에 한하며,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지역을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
- ※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추후 법정 또는 공인된 기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
- ※ 우대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(단,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중복 적용)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
- ※ 서류 및 필기전형에 한하여 사회형평적 인력(합격선 -20점 이내 20%)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(선발인원의 30%에 미달하는 성(性)에 대해 합격선 -3점 이내)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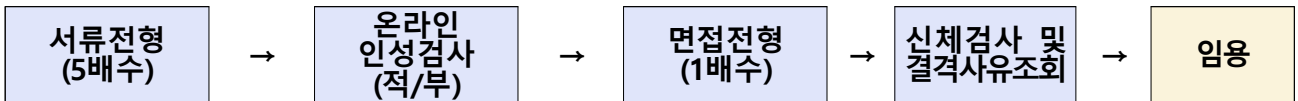
2 전형절차 및 일정

□ 채용절차

○ 일반직 및 공무원직



○ 기간제계약직



※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모든 전형(결격사유 조회 포함)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(임용예정자) 선발

□ 채용기준

전형	구분	평가기준
서류전형	경력직	• 경력사항, 자격증, 한국사능력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가점 등
	신입직	• 교육사항, 자격증, 한국사능력,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, 우대가점 등
필기전형	일반직, 공무원직	•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(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) • 인성검사
	기간제계약직	• 온라인 인성검사
면접전형	일반직, 공무원직 신입직	• 집단면접(토의면접 및 인성면접) 또는 개별면접
	기간제계약직	•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

□ 채용일정 ※ 각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전형절차	일정	비고
공고	4.28.(화) ~ 5.12.(화)	공단 홈페이지, 알리오 등
지원서 접수	5.1.(금) ~ 5.12.(화) 13:00	온라인 접수(채용 홈페이지) - 우편,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5.21.(목)	채용 홈페이지
필기전형(온라인 인성검사) / 합격자발표	5.30.(토) / 6.2.(화)	장소(서울소재) 및 시간 추후 공지 *기간제계약직은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
온라인 서류제출	6.2.(화) ~ 6.5.(금) 15:00	
면접전형 / 합격자발표	6.11.(목)~12.(금)/6.16.(화)	장소(서울 등 소재) 및 시간 개별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6월말	채용 홈페이지
임용예정	6월말 ~ 7월초	세부사항 개별 공지 예정

* 자격 진위 조회,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등 관련 절차 종료된 후 최종합격자 발표 · 임용 예정

3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5. 1.(금) ~ 5.12.(화) 13:00 까지
- 접수방법: 우리 공단 채용홈페이지(<https://fipa.careeron.co.kr/>)에서 온라인 접수
 - 채용공고문, 직무기술서,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반드시 정독 후 작성
 -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
 - 각 전형별 시간, 장소, 합격자 확인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함으로 미확인
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.

4 제출서류

- 서류전형: 공단 채용홈페이지(<https://fipa.careeron.co.kr/>)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
으로 직접 응시원서 작성 입력(별도 제출서류 없음)
 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및 경력직 직무수행계획서(채점비중이 크므로 상세히 기록
하여야 하며 공란, 무의미한 문구 반복, “그런 경험 없음”, 글자수 미달, 오기입, 블라인드
위배, 누락 등 이외의 모든 불성실 기재 사유 해당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)
- 면접전형: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서류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
해당 관청·기관에서 발급한 스캔본 온라인 제출 및 원본 서면 제출
- 최종합격: 임용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대상 공단 채용홈페이지의
안내에 따라 면접 시 제출한 서류 일체 원본 제출

구분	주요내용
공통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 불일치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○ <u>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 이전 온라인 사전제출</u>하여야 하며, <u>면접 당일 원본 서류 별도로 제출하여야하니</u>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○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(자격증, 수료증, 성적·학력·경력증명서 제외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2026.4.28. 이후 발급 받은 자료 제출○ <u>경력증명서 제출 시(최근 1년 이내 발급분)</u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서에 <u>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서 제출</u>- 경력증명서 상 <u>수행 업무 내용이 명시</u>되어 있어야 함- 재직 중인 경우, 재직증명서 대체가능*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<p>필수 (분야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선박 분야) 해기사면허, 상급안전교육,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(항해에 한함), 선원법에따른 건강검진증명서, 승무경력증명서 ■ (토목 분야)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(토목분야초급기술자)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 * 기간제계약직 토목 부산 제외 ■ (수산 분야) 해당분야 학사(이상)학위서 또는 졸업증명서(학위수여증명서) * 기간제계약직 수산 서울 제외 ■ (명예관리인 분야)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제외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가입확인서 ■ (경력직)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(업무상세기재)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
<p>해당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격증 사본 각 1부 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) ■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 수료증 (교육사항 기재 확인용 / 최근 1년 이내 발급분) ■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졸업(예정)/재학(휴학)/제적 증명서 (비수도권 지역인재 확인용 / 최근 1년 이내 발급분) ■ 병적증명서 (남성지원자 및 병역 해당자) 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해당 지역 거주자 확인용) ■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 ■ 한부모가족 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■ 다문화가족 중 귀화 허가를 받은 본인, 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: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, 前 국적 표시) ■ 다문화가족 중 귀화를 하지 않은 본인, 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: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■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(경력사항 작성자) ■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 (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시설 등 퇴소증빙서류)

5 유의사항

가. 입사지원 및 제출서류

-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학력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,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.
-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되며, **향후 5년간 공단 입사지원에 제한**됩니다.

나. 합격자 처리 등

- 공통 자격요건,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입사 후에도 **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**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
다. 채용서류 반환청구

-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(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),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라. 기타사항

- 임용 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'공지사항 및 FAQ'와 '채용문의'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
12.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붙임2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〈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〉
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.경기.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.중퇴한 자 또는 재학.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.경기.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.경기.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.도를 기준으로 판단